『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』 참여 모집 공고

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고 해외투자자 및 해외기업과의 연결을 통해 도내 기업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「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」 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3월 25일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**1. 사업개요**

- 사업기간: 협약일 ~ 2022년 11월 30일

**- 지원규모: 기업 당 최대 1,000만원, 15개사 이내 지원**

**- 모집대상: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**

**경기도 소재 중소기업\*, 외투기업 등**

**\* 최근 3년간 매출액 100억 이상을 달성한 기업**

-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

|  |
| --- |
| 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기업  ∘ 동일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의 **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**에 선정된 기업  ∘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 ∘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에 따른 법위반기업  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**[별표 1]**에 해당하는 업종 |

**2. 지원내용**

- 지원내용: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비 지원(세부내용은 운영지침 참고)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구분** | **지원내용(예시)** | **한도액** | **비고** |
| 지적재산권 및 인증비용 | ∙ 지적재산권(국내외 특허, 상표, 디자인) 출원비 및 등록비 지원 등  ∙ 시험성적서 수수료, 인증 수수료 등 | 총 사업비의 50%이내 | 각 항목 당  지원금 한도액을  총 지원금의 50% 이내로 함 |
| 홍보 및  투자유치활동 | ∙ 기업소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동영상\* 및 카달로그(영문 포함) 제작비, 번역비 등 | 총 사업비의 50%이내 |
| 해외진출 및  투자유치컨설팅 | ∙ 해외진출, 기술도입 및 투자금 도입을 위한 컨설팅, 멘토링, 신규 해외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비용  ∙ 신규 해외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비용, 대행비, 컨설팅비(환경컨설팅 등) | 총 사업비의 50%이내 |
| 운영비 | ∙ 사업비 사용분 정산에 따르는 회계법인 정산 비용  ∙ 지원금 100%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료 지원 |  |  |
| 기타 | ∙ 위에서 명기되지 않았으나,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적으로 “필요한” 비용은 선정 심의를 통해 지급여부 판단  **(가능 예시)**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해외여비(항공료), 해외 전시회 참여를 위한 부스임차비, 시설장치비,  **(불인정 예시)**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일반체류경비(식비, 숙박비 등) | 총 사업비의 50%이내 | ∙ 선정절차에서 타당성을 판단해 지급결정 가능하나 비용과 규모는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되며 정산 시 당초 승인 내용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불인정 및 환수 조치 |

**※ 지원금은 “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”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으로 신청 및 지원하며, 또한 부가세 등 제세공과금은 지원업체가 자부담하여야 함**

3. 선정절차

- 2단계로평가하며, 선정결과 개별통보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구 분** | | | | |  | **일 정** | | | | |  | **추 진 주 체** | | | | |
|  |  |  |  |  |  |  | |  | |  |  |  | |  | |  |
| **사업공고** | | | | |  | 3월 | | | | |  | 경기도ㆍ경과원 | | | | |
| ⇩ | | | | |  |  |  | |  | |  |  |  | |  | |
| **신청기업 사업 중복지원 여부 검토** | | | | |  | 4월 | | | | |  | 서류 검토 | | | | |
| ⇩ | | | | |  |  | |  | |  |  |  | |  | |  |
| **선정평가 (1차 서면평가)** | | | | |  | 4월13일(예정) | | | | |  | 평가위원회(서면평가) | | | | |
| ⇩ | | | | |  |  | |  | |  |  |  | |  | |  |
| **선정평가 (2차 발표평가)** | | | | |  | 4월18일(예정) | | | | |  | 평가위원회(발표평가) | | | | |
| ⇩ | | | | |  |  | |  | |  |  |  | |  | |  |
| **사업협약 및 지원금 지급** | | | | |  | 4월 ~ 5월 | | | | |  | 선정기업ㆍ경과원 | | | | |

**※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, 세부일정 변동 가능**

4. 신청기간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**2021년 3월 25일(금) ~ 4월 7일(목) 17:00,** 총 2주간

- 모집공고 : 이지비즈(www.egbiz.or.kr)

- 신청방법 : 신청서류 작성 후 내방 또는 우편접수

- 제 출 처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(삼평동) 4층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민현아 대리

|  |
| --- |
| ** 사업신청 제출서류**  ① 사업신청서[제1호 서식] 및 사업계획서[제2호 서식]  ②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증 – 각 1부  ③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– 1부  ④ 보유기술에 대한 설명자료 및 자격증 사본 등(해당자에 한함) - 각 1부  ⑤ 개인(기업)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[제3호 서식] - 1부  ⑥ 기업의 법위반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[제4호 서식] - 1부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– 각 1부  ⑧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[제5호 서식] - 1부  ※ 절차별 제출서류 및 양식은 사업운영지침 참고 |

5. 향후일정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사업선정** | → | **협약 및**  **사업비교부** | → | **사업참여** | → | **성과보고**  **및 정산** |
| **2021.04.21.(예정)** | 2022.04.~05. | ~2022.11. | 2022.12. |

**※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, 세부일정 변동 가능**

6. 유의사항

◎ 사업신청 유의사항

-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-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은 자동으로 선정 취소되며, 관련법에 따라 고발되고 지원금은 환수됨

-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평가(지원금 정산 포함)를 실시하여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됨

-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,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차년도 사업 지원 제한됨

-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임

◎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기업 제제조치

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
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융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
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
-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◎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기준

- (지원 제한 대상) 공정·노동·환경·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

- (위반사실 조회기간) 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

- (사업참여 제한조건)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(1회 이상)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
8. 문의처

- 연락처 : 031-776-4804, 민현아 대리

- 이메일 : hyeonamin@gbsa.or.kr